

1. 제정이유

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(2020.11.27. 시행),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(제5조)
- 나. 자진신고 등 과징금 감면 세부기준 마련(제7조 및 제8조)
- 다. 과징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(제12조 및 제13조)
- 라.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환급 세부절차 마련(제14부터 제17조까지)

3. 의견제출

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환경조사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(우편번호 : 30103)
- 전자우편 : hky2000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171

4.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(전화 044-201-6161, 팩스 044-201-61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**환경부공고제2020-936호**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

환 경 부 장 관

「**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**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대기배출시설 편입에 따른 허가(신고) 기간의 조정 및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기배출시설에 편입(19.5.2 개정)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(신고)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(별표 3 제2호다목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화학용어 KS 기준(대한화학회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)으로 대기오염물질명 수정(별표 1 제50호 및 제61호 등)

다.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('20.5.26.) 개정사항 반영(제67조의2제2항 등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대기관리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
- 전자우편 : lcm1945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915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 ⇒ 입법예고란)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(전화 (044) 201-6905, 팩스 (044) 201-69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438호

「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」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

2. 의견제출

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